

#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 관한 탐색 -

최종석 \*

1. 문제의 소재
2. 세종 32년 사례: 갈등의 시작
3. 단종 즉위년과 성종 7년의 사례: 갈등의 심화
4. 중종 32년 사례: 갈등의 해소
  - 1) 五拜三叩頭 예 수용의 경위
  - 2) 五拜三叩頭 예 수용의 원인
5. 맷음말을 대신하여: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1. 문제의 소재

고려 말 아래로 명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는 기본적으로 홍무제가 사여한 『蕃國儀注』의 ‘蕃國接詔儀注’를 바탕으로 하여 거행되었다.<sup>1)</sup> 명조는 1370년 (홍무 3) 9월에 편찬된 『大明集禮』의賓禮 항목에다가 蕃國 내에서 번국이 주체가 되어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되는 의례들의 의식 절차까지 직접 작성하여 수록하였으니,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이에 해당한다. 『번국의주』란 명이 1369년(홍무 2) 9월에 작성된 각종 蕃國禮를<sup>2)</sup> 보완하여 『대명집례』의 번례를 완성해 가는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최종석, 2018 「조선초기 道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

와중에 고려 측의, 명을 대상으로 거행되는 의례의 頒賜 요청이 있자 이에 응하여 빈례 가운데 번국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의례들을 뽑아 成冊하여 고려에 하사한 것이었다. 그러하였기에 『번국의주』는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의 네 가지 의주들로 구성되었다.<sup>3)</sup>

『번국의주』를 하사받은 이후로 영조의례를 포함하여 명을 상대로 한 각종 외교의례는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들을 토대로 거행되었다. 즉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대명 외교 의례들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번국의주』를 저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拜表儀 등 또한 『번국의주』를 활용하여 작성된 결과물이었다.

본고에서는 영조례 운영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조례 운영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에서 어떠한 지점이 역사성을 노정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를 토대로 한 영조례 운영 양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려말에는 『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의 복제품과도 다름없는 ‘迎大明詔使儀’에 의거하여 영조례가 거행되었다. 그런데 ‘迎大明詔使儀’는 ‘원본’인 『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와 마찬가지로 영조례 예식절차의 뼈대만 갖추고 있어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영조례가 거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영조례 운영은 ‘迎大明詔使儀’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 빈 부분들을 다소 편의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매우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로 한동안 이러한 운영 양상은 지속되었다. 다만 ‘迎大明詔使儀’ 식의 복제품이 아닌 『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를 직접 활용한 데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었다. 이때에도 역시 영조례의 실제 거행은 『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를 바탕으로 하면서 빈 부분들을 편의적으로 매우

2) 『明太祖實錄』 권45, 洪武 2년 9월 壬子.

3) 『번국의주』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최종석, 2015 「고려 말기 · 조선 초기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에 의거하였다.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세종대 들어서는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중국의 천자를 중심이자 정점으로 한 천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천하 내 동국에서 동인이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명 중화를 추구·구현하고자 함<sup>4)</sup>—에 걸맞은 ‘제대로 된’ 영조의례를 거행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번국의주』를 토대로 하면서도 빈틈이 제후 分義를 포함한 禮義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메워져 있었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스스로 찾아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두드러졌다. 1428년(세종 10) 3월 19일 예조가 작성하여 올린 ‘迎詔儀’와<sup>5)</sup>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보완 작성된 『세종실록』 오례 迎詔書儀와 『국조 오례의』迎詔書儀는 이러한 움직임의 성과라 할 수 있다.<sup>6)</sup>

이처럼 조선은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를 토대로 영조례를 운영하였기에, 영조례 운영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 사이에 갈등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고려가 자체적으로 고안·작성한 의주를 토대로 영조의례를 거행한 고려전기에서 조차 송, 요, 금의 사신과 영조례 예식절차를 두고 갈등한 경우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조례의 일부 예식절차를 놓고 조선과 명 사신 간에 갈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 심지어 세종대 이후로도 일부 의절들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곤 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세종대 이후의 영조례 운영이 명 측의 구미에 훨씬 맞는다고 생각되는데도 말이다.<sup>7)</sup>

이들 가운데 주요하고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은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 절차였다.<sup>8)</sup> 조선 측은鞠躬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려 한 반면, 명

4)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역사비평』 121 참조.

5)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신축.

6) 영조례 운영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최종석, 2018 앞의 논문에 의거하였다.

7) 명 사신이 문제 삼은 것은 세종대 이후로 의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온 의절들이었다. 예전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세종대 이후로 새삼스레 문제시 된 셈이다.

8) 迎詔 시 국왕의 乘輦 여부를 놓고 발생한 갈등도 이에 못지않지만 이 문제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이규철, 2015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의식」『역사와 현실』 98 참조.

사신은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종 말년 이후로 이 사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립이 있었고, 그러다 중종 32년에 이르러 조선이 명 사신의 요구를 수용하여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당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명 사신의 五拜三叩頭 禮 요구를 부당하고 강압적 성격의 것이거나 보다 저자세를 강요하는 행위로, 조선 측의 鞠躬 禮 고수를 이에 대한 거부(저항)로 간주하였으며, 중종대 五拜三叩頭 禮의 수용은 조선의 대명 태도가 저자세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고 보기도 하였다.<sup>9)</sup> 그런데 명 사신의 五拜三叩頭 禮 요구를 부당하고도 강압적 성격의 것이거나 보다 저자세를 강요하는 행위로 바라보는 인식은, 입증된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자가 근대적 감각에서 전제한 것에 가깝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관련 기록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은 소위 ‘자주적’ 방식으로 영조례를 거행하지 않고 명이 사여한 『蕃國儀注』·『蕃國接詔儀注』를 준용하였다. 문제가 된 鞠躬 禮의 경우, 조선은 五拜三叩頭 禮를 굴욕적으로 여겨 국궁 예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번국의주』에서 그냥 서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한 규정을 황제의 명령을 공경하기 위해 국궁 예로 변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조선이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수용하지 않고 鞠躬의 禮를 고수한 것은 부당하고도 저자세를 강요하는 행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 측의 부당한 강요와 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기존의 도식에서 벗어나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벌어진 조선과 명 사신 간의 갈등과 그 맥락에 천착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조례 의식 절차들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수차례 충돌하곤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9) 계승범, 2006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대동문화연구』 53: 유바다, 2012 「朝鮮 初期 遷詔敕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역사민속학』 30. 이외에도 권인용, 2005 「16세기 중국사신의 조선인식: 龔用卿의 『使朝鮮錄』을 중심으로」『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 인식』, 고구려연구재단과 소종, 2010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의 조선 사행 연구」『역사문화논총』 6 그리고 전세영, 2011 「명대(明代) 중국의 조선관(朝鮮觀) 연구: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을 중심으로」『21세기 정치학회보』 21-1을 참조 할 수 있다.

조선과 명 사신 각각의 주장과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전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세종대 이후로 새삼스레 문제시 된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중종 32년에 조선이 명 사신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요구의 수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 작업이 조선시대 영조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아울러 조선에서 거행되는 영조례에 대한 명조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고대한다.

## 2. 세종 32년 사례: 갈등의 시작

먼저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한 첫 사례인 다음 기록을 보도록 하자.

사신이 金何에게 말하기를 “洪武禮制에는 문밖에서 조서를 맞이함에 五拜扣頭禮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에서 단지 몸을 굽혀서 맞이한다 하니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하니 (중략) 이예 (국왕은) 李季甸에게 명하여 使臣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郊에서 맞이할 때 五拜하는 禮는 마땅하나, 藩國儀注에는 문밖에서 조서를 맞이할 때 절하는 예식이 없습니다. 高皇帝(홍무제: 필자)가 이 책을 頒賜한 아래 我國은 모두 이 예식을 준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지금 그 책이 있습니까” 하매, 즉시 그것을 내어 보이니, 두 사신이 보고 나서 서로 눈짓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홍무예제만을 보았고 이 책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의 의주에는 鞠躬의 절차가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니, 李季甸이 말하기를 “天子의 命을 공경하여 감히 서서 맞이할 수 없으므로 다시 이 鞠躬 一節을 더한 것입니다” 하였다. 使臣이 말하기를 “말한 바가 옳습니다” 하였다.<sup>10)</sup>

이때 명 사신으로 조선에 온 자들은 翰林侍講 倪謙과 刑科給事中 司馬恂으로 경태제의 등극 조서를 지니고 왔다. 세종 32년 1월 29일 벽체역에서 명 사신은

---

10)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을사.

문밖에서 五拜扣頭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규정한 『홍무예제』에 근거하여, 도성 문 밖 모화관에서 鞠躬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려 하는 조선 측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sup>11)</sup> 국왕은 左副承旨 李季甸을 통해서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영조례를 거행해 오고 있었고 『번국의주』에는 도성문 밖에서 拜禮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사신은 『번국의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조선 측의 거행 방식을 인정하였다. 다만 『번국의주』에 鞠躬의 礼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절이 적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당초에 사신은 후술하듯 조선이 올린 의주를 보고서 도성문 밖에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이 『번국의주』에 근거한다는 조선의 해명과 달리 정작 『번국의주』에는 국궁의 예가 적시되지 않은 탓에 사신은 이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계전은 『번국의주』대로 그냥 서서 조서를 맞이하는 방식이 불경하다고 판단하여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예식을 개정하였다고 하였다.<sup>12)</sup> 사신은 조선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에는 “이날 왕은 나라 안의 관리들과 耆老와 승려 · 도사를 이끌고 國門 밖에 나와 맞이한다.迎接官이 詔書를 맞이하고 公館에서 나와 國門에 이르면, 金鼓가 앞에 있고 다음으로 耆老와 승려 · 도사가 가고 다음으로 관리들이 朝服을 갖추어 입고 가며 다음으로 왕이 冕服을 갖추어 입고 가고 다음으로 儀仗과 鼓樂이 가고 다음으로 詔書를 넣은 龍亭이 가고 使者는 常服 차림으로 龍亭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여<sup>13)</sup> 국문 밖에서 국왕이 어떠한 예

11) 명 사신이 언급한 『홍무예제』란 그 가운데 “一 凡使者欽賚詔書 至各處開讀 (중략) 使者到郊外下馬 候龍亭到來 親捧詔書置龍亭中 使者立於龍亭之東 本處官具履行五拜禮訖”(『洪武禮制』出使禮儀)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12) 부연하자면, 명 사신은 두 종의 의주를 보았을 것이다. 하나는 조선이 올린 의주이고 다른 하나는 『번국의주』이다. 조선이 올린 의주는 『번국의주』를 토대로 하여 자체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이 규정된 반면, 『번국의주』에는 오배삼고두의 예도, 국궁의 예도 적시되지 않았다.

13)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 “是日 王率國中衆官及耆老僧道 出迎於國門外 過接官迎詔書出館至國門 金鼓在前 次耆老僧道行 次衆官具朝服行 次王具冕服行 次儀仗鼓樂 次詔書龍亭 使者常服行 於龍亭之後”.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는 현전하지 않지만 필자가 이를

로 조서를 맞이해야 하는지가 적시되지 않았다. 조선은 국왕이 선 채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으로 독해하였는데,<sup>14)</sup> 1428년(세종 10) 3월 19일 예조가 작성하여 올린 ‘**迎詔儀**’—이하에서는 이를 세종 10년 ‘**迎詔儀**’라 칭할 것임—는 국왕과 그 신하들이 조서를 소지한 사신을 국궁의 예로 맞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15)</sup>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은 세종 10년 ‘**迎詔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를 상세화한 의주라 할 수 있는 세종 10년 ‘**迎詔儀**’의 작성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것이다.<sup>16)</sup> 달리 말해, 고려말 이래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도성문 밖에서 선 채로 조서를 맞이해 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禮義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sup>17)</sup>

한편 세종 32년의 이 사례는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한 첫 경우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때서야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을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은 사신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신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때의 영조의례도 전례대로 거행되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고려말 이후로 도성문 밖에서 국왕이 그냥 선 채로 조서를 맞이하다가 늦어도 세종 10년 ‘**迎詔儀**’ 작성 이후로는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였어도 세종 32년의 사례 이전까지 이러한 방식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때 새삼스레 문제가 된 것이다. 사신이 ‘유별나게’ 문제를 삼아서 말이다.

---

복원한 바 있다. 복원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와 그 복원 방법에 관해서는 최종석, 2015 「고려 말기 · 조선 초기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를 참조하기 바란다.

- 14) 고려말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려사』 예지 ‘**迎大明詔使儀**’는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의 복제품과도 같은 것이다 보니(최종석, 2015 위의 논문; 최종석, 2018 앞의 논문), 국문 밖에서 국왕이 어떠한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 15)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신축.
- 16) 최종석, 2018 앞의 논문 참조.
- 17) 세종 10년 ‘**迎詔儀**’ 작성 이전의 어느 때부터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었다가 의주 작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러했다면 세종 즉위년 도성문 밖에서 칙서를 **躬身**(=鞠躬)으로 맞이하도록 규정한 ‘**迎使臣儀**’의 작성(『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9월 기유)을 계기로 하여 조선 국왕은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윤승희, 2018 「조선 초기 조선국왕 책봉의례의 정비와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5, 97면 참조.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아 온 예식이 특정 사신에 의해 문제로 대두한 현상은 명조가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를 직접 작성하여 고려에 하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정작 번국 내에서 이것의 구현 실태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시피 한 사실과 연관이 깊다. 명이 작성하여 하사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는 영조례 예식절차의 뼈대만 갖추고 있을 정도로 소략하여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영조례가 도저히 거행될 수 없었다.<sup>18)</sup> 따라서 만약 명이 영조례의 측면에서 明代的 화이질서—원조의 천하질서를 의식·계승·전유한 것으로 이적의 세계까지를 포함한 천하에 보편적으로 미쳐야 하는 천자의 천하 지배를 禮制의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질서<sup>19)</sup>—를 철두철미하게 구현하고자 했다면, 소략하고 부실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를 작성하고 고려에 반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蕃國接詔儀注’를 상세화한 의주를 작성하여 고려(조선) 측에 하사하였을 것이다. 혹은 詔使에게 상세화한 의주를 등사해 주어서 그가 明代의 화이질서의 철저한 구현에 걸맞은 영조례 거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이도 아니면 조사로 하여금 고려(조선)가 하사받은 의주를 준용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의주의 빈 부분을 타당하게 메우고 있는지 등을 신경 써 들여다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명은 ‘蕃國接詔儀注’를 상세화한 의주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후술하듯 명 사신은 의주 면에서 보자면 빈손으로 왔으며 심지어 ‘蕃國接詔儀注’(『번국의주』)가 고려에 하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명조는 개략적인 성격의 ‘蕃國接詔儀注’의 작성과 고려에의 하사에 자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렇게 되면서 번국에

18)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2018 앞의 논문 참조.

19) 명대적 화이질서에 관해서는 宮岐市定, 1969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東洋史研究』27-4; 岩井茂樹, 2005 「明代中國の禮制霸権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東洋文化』85; 檀上寛, 2013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를 참조하기 바란다.

20) 이 사실은 예제를 매개로 한 明代의 화이질서 구현의 실상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 등은 명이 드물게도 번국 내에서의 구현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 만큼 규정력이 강하였을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蕃國接詔儀注’의 경우 명은 사신을 통해 그것의 구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면상의 구현에 만족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서 영조의례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예식 절차 가운데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모두 사신의 뜻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명조는 의주 면에서 사신에게 별다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에, 그 뜻이란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신 개인의 성향, 역량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다 보니 도성문 밖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누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다른 이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초에 한반도에 온 사신들 가운데 다수가 환관이었던 사실은<sup>21)</sup> 세종 32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를 째나 설명해준다. 사신으로 온 환관들은 놀물 등의 쟁밥에만 눈이 멀어 의례 절차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영조례 예식 절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환관이 아니더라도 명초에 고려에 보낸 사절들은 거의가 유학이나 시문에 능했다거나 의례제도에 친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지적<sup>22)</sup> 역시 주목된다. 사신의 성향 면으로 보아 당시에는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조선의 방식을 문제 삼을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었다.

한편 조선은 명조의 자족적, 소극적 태도와는 별개로 자발적 동력을 토대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영조례를 거행하였고 더욱이 세종대 이후로는 다소 편의적이고 임기응변 식으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의 빈 부분들을 메우는 기왕의 방식에서 벗어나 빈 구석들을 제후 分義 등을 비롯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걸맞도록 채워 나갔다. 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지면상에 머무를 수 있는 명대적 화이질서가 번국에 구현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오랫동안 사신과 특별한 갈등 없이 영조례가 거행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못되

21) 정동훈, 2013 「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 홍무 연간 명의 사신 인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9; 정동훈, 2017 「永樂帝의 말과 글: 영락 연간 조선-명 관계의 두 충위」 『한국문화』 78 참조.

22) 정동훈, 2013 위의 논문, 143면. 그러한 지적은 홍무 연간에 명에서 고려에 보낸 사절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홍무 연간 말년부터 영락·선탁 연간까지는 사신으로 온 자들 가운데 거의가 환관이어서 朝臣은 없다시피 하였다. 홍무제 이후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정동훈, 2017 위의 논문, 157-160면 참고.

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 32년에 온 詔使는 이전 사신들과 어떤 점에서 달라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이 문제로 부각된 것일까? 우선 당시 조사는 翰林侍講 倪謙과 刑科給事中 司馬恂으로 정사와 부사 모두 환관이 아닌 문관이었다. 물론 이때 처음으로 문관인 조사가 온 것은 아니었기에, 이 요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사신들과 구별되는 정사 예겸의 남다른 면모가 주목된다. 그는 한림원관으로 조선의 문신들과 시부를 주고받으며 이를 나중에 皇華集으로 편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詩賦外交의 전통이 생겨났으며, 명은 문장력을 통해 중국의 체통을 지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사신 인선에 더욱 신경을 써 한림원관 등 문장에 능한 문신을 주로 선발하였다고 한다.<sup>23)</sup>

예겸의 이러한 면모는 그가 예제에도 밝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명 사신을 상대로 問禮의 임무를 맡은 禮曹正郎 安自立이 황주에서 遷詔儀注를 명 사신에게 보여준 사실은<sup>24)</sup> 주목된다. 세종 6년 10월 갑인일의 사례를<sup>25)</sup> 제외하고는 기록상으로 사신이 영조례 거행에 앞서 遷詔儀注를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세종 6년 10월 갑인일 사례의 경우 당초에 조선 측은 명 사신에게 의주를 보여줄 의사가 없다가, 명 사신들이 영락제의 상중을 이유로 영조 시에 金鼓를 울리지 않으며 악부를 차려 놓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고집하자, 문례관 鄭旅는 사신들의 고집을 꺾고 길례가 아닌 가례로 조서를 맞이하기 위해 詔書迎接儀註를 내어 보였다. 이와 달리 세종 32년 사례의 경우 국왕과 세자 모두 병고로 인해 조서를 맞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왕자가 代行해야 했고, 조선 측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의주를 작성한 후 이것의 타당함을 묻기 위해 의주를 사신

23) 정동훈, 2013 앞의 논문, 142면. 김은정에 따르면, 예겸은 조선의 문신들과 시부를 주고받은 것을 『遼海編』으로 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은 세조대 이후로 명 사신과 酬唱한 시문을 『皇華集』으로 편찬하였다고 한다. 예겸의 『황화집』은 세조대가 아니라 1608년(선조 41)에 역대 『황화집』을 일괄 간행할 때 1차분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요해편』을 편집하여 수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은정, 1999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한국한시연구』 7 참조.

24)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정유 “遣禮曹正郎安自立 齋迎詔儀注 往黃州問禮於使臣”;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임인 “安自立回自黃州啓曰 使臣見儀注 曰好”

25)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갑인.

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의주의 제시는 왕자의 대행에 관한 예식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조선의 예상과 달리 예제에 밝았을 사신 예겸은 영조례의 바람직한 거행을 염두에 두고 의주를 검토하면서 도성문 밖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sup>26)</sup>

다음으로 갈등 양상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명 사신은 애초에는 영조례 의주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뒤늦게 五拜三叩頭의 禮가 아닌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조선 측이 보여준 영조의주를 좋다고 한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논란은 영조례 의식 전반이 아니라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에 한정되었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해당 논란은 각자 준용하는 의주가 상이해서였다. 조선 측은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이를 토대로 상세화한 의주)를, 명 사신은 『홍무예제』를 준용하고 있었다.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의 준용과 이에 따른 국궁 예의 거행은 공식적이며 고려말 이래로인 것과 달리, 『홍무예제』의 준용, 구체적으로 이에 따른 오배삼고두 예의 거행은 사신 개인의 의견일 따름이었다. 이에 관한 명 측의 공식 의주를 굳이 말하자면, 『홍무예제』가 아니라 『大明集禮』賓禮의 ‘蕃國接詔儀注’와 후술하듯 이를 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 사신은 조선 측이 제시한 의주를 보고나서 도성문 밖에서는 국궁이 아니라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의 예적 근거가 『홍무예제』일 것으로 짐작하였다. 『홍무예제』에 근거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언설이 명 사신의 개인적 판단·입장인 게, 명 측의 공식 의주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있거니와, 후술하듯 도성문 밖에서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타 사신들은 『홍무예제』가 아닌 다른 의주·예서를 준거로 삼았다. 이처럼 당시 명 사신은 개인적인 판단·입장에서 『홍무예제』에 근

26) 예겸과 달리 세종 6년 10월의 사신들은 의주를 보기는 했어도 자신들의 주장인 金鼓를 울리지 않으며 악부를 차려 놓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신경 쓸 따름이어서, 의주 내에 적시된, 도성문 밖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27) 명 사신은 『홍무예제』를 준거로 삼으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거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를 주장하다 보니, 번국에 적합하면서도 홍무제가 사여한 의주인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었다.<sup>28)</sup>

이렇듯 세종 32년 당시 명 사신은 문관 출신으로 이전의 조사들과 달리 바람직한 영조례의 거행을 염두에 둔 채 사전에 미리 영조의주를 확인하였고, 『홍무예제』를 근거로 하여 도성문 밖에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조선의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번국에 적합하면서도 홍무제가 사여한 의주인 『번국의주』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는 자신의 입장 을 철회하였다. 그런데 당시 사신이 조선의 방식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잠정적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조사들과 달리 도성문 밖에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문제 삼은 것도 사신의 개인적 판단·입장이요, 조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입장 을 철회한 것도 사신의 개인적 판단·입장이었기에, 추후에 사신에 따라서는 『번국의주』의 존재를 확인하고서도 이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술 하듯 실제로 그러한 일은 발생하였다.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한 또 다른 사례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들 사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대하지만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번국의주』의 작성 이후인 1375년(홍무 8)에 '蕃國迎接儀'라는 의주가 작성된 사실이다.<sup>29)</sup> 이것은 홍무 3년에 작성된 『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의 개정인 셈이었다—『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의 개정을 의미하기도 함—. 또한 『大明會典』 권58, 禮部 行人司 儀制清吏司 蕃國禮에 따르면, 홍무 18년에 蕃國迎詔儀가 정해졌다고 한다. 이것은 홍무 8년의 '蕃國迎接儀'와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하면서도 보다 자세하다. 홍무 8년의 '蕃國迎接儀'는 『번국의주』(『대명집례』)의 '蕃國接詔儀注'와 거의 동일하면서도 '王具冕服 衆官具朝服 行五拜禮'라고 하여,<sup>30)</sup> 『번국의주』(『대명집례』)

28) 『홍무예제』는 번국이 아닌 명 영역 내의 부·주·현을 대상으로 한, 지방관이 준수해야 하는 예제였다. 김문식, 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참조.

29) 『明太祖實錄』 권97, 洪武 8년 2월 壬寅 “又定頒詔諸蕃及蕃國迎接儀”

‘蕃國接詔儀注’와 달리 번왕이 國門 밖에서 조서를 맞이할 시에 ‘五拜禮’—정확히는 오배삼고두<sup>30)</sup>를<sup>31)</sup> 행하도록 규정하였다.<sup>32)</sup> 번왕이 오배삼고두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변화는<sup>33)</sup> 蕃國의 王 또한 명의 지방에서 와 마찬가지로 ‘五拜禮’(五拜三叩頭 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sup>34)</sup>

이처럼 『번국의주』(『대명집례』) ‘蕃國接詔儀注’의 작성 시에는 번왕이 國門 밖에서 오배삼고두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없었지만, 그 이후 각각 흥무 8년과 18년에 작성된 ‘蕃國迎接儀’와 ‘蕃國迎詔儀’는 ‘五拜禮’(五拜三叩頭 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로 인해 조선과 명의 공식적인 의주 사이에는 국문 밖에서 번왕이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명은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번국에 공식적으로 반포하지 않았다. 조선이 이것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은 이를 응변해 주고 있

30) 『明太祖實錄』 권97, 洪武 8년 2월 壬寅.

31) 여기서 ‘五拜禮’가 五拜三叩頭 禮를 의미하였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령 『홍무예제』 및 홍무 8년의 ‘蕃國迎接儀’ 그리고 홍무 18년의 ‘蕃國迎詔儀’에는 공히 五拜 禮로 조서를 맞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식 구현의 실제를 언급한 기록은 五拜三叩頭 禮로 조서를 맞이하였음을 말해준다.

32) 홍무 18년의 蕃國迎詔儀에도 “王卽率國中衆官及耆儒僧道 出迎於國門外 至館中 具冕服 衆官具朝服 行五拜禮”라고 하여, 번왕은 五拜禮로 조서를 맞이한다고 규정되었다.

33) 이것 외에 다른 점이라고는 영조례를 마친 후 번왕이 사신과 상견할 때 『번국의주』 蕃國迎詔儀는 ‘蕃王與使者分賓主’라고 규정했다면 ‘蕃國迎接儀’는 ‘蕃王居西使者居東’이라고 적시한 것 정도였다.

34) 『洪武禮制』에 따르면, “一 凡使者欽賚詔書 至各處開讀 (중략) 使者到郊外下馬 候龍亭到來 親捧詔書置龍亭中 使者立於龍亭之東 本處官具履行五拜禮訖”이라고 하여, 명의 지방에서 조서를 맞이할 시에 관원은 五拜禮를 행해야 한다. 『홍무예제』는 『대명집례』, 『번국의주』와 마찬가지로 홍무 초년에 작성되었는데, 당시 명 조정은 지방 아문과 번국 간에 교외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禮가 상이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싶다. 그러나 번국도 지방 아문과 마찬가지로 五拜禮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을 것이다. 원대에 국내의 지방과 동일한 의례 규정을 외국인 고려에 확대해서 적용했던 것을 전례로 삼아, 명초의 의례 제정 과정에서도 지방과 번국의 의례를 거의 동일하게 설정했고 이는 ‘一視同仁’의 차원에서였다고 한 의견을(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참조하면, 번국에서도 五拜禮를 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一視同仁’의 보다 철저한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번국의주』의 반사도 고려의 요청에 응해서 이루어진 데서<sup>35)</sup> 엿볼 수 있듯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의 작성은 의주 작성 자체가 목적이었지, 번국에 이를 반사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는 아닌 듯싶다. 더욱이 명은 사신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숙지하거나 등사하여 가도록 강제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사신은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니, 위 인용문에서 보듯, 사신은 번왕이 오배삼고두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의 근거를 『홍무예제』라는 잘못된 번지수에서 찾고 있었다.

명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번국에 구현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까닭에서인지, 조선과 명의 공식적인 의주 간에 국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상이하더라도, 이 사실은 꽤 오랫동안 조선에서 인지조차 되지 못하였다. 명 사신조차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이상할 게 못 된다. 설령 조선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의 작성 사실과 그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사되지 않았기에 인지하지 못했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명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조선에 반사하였다면 조선은 이를 수용·준용하였을 것이고, 이와 맞물려 국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개정된 의주의 구현 역시 사신의 개인적 역량, 관심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환관 출신 사신은 개정된 의주에 무지 내지 무관심하였을 것이고, 위 인용문의 사신조차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문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그다지 낫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사신에 따라서는 개정된 의주를 근거로 하여 오배삼고두 예를 관철하려고 힘썼고 『번국의주』에 근거한 국궁 거행을 舊禮를 묵수하는 행위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니,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였다.

35)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참고.

### 3. 단종 즉위년과 성종 7년의 사례: 갈등의 심화

단종 즉위년 8월 22일에도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조선과 명 사신 간에 갈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명 사신으로 조선에 온 자들은吏部郎中 陳鈍과 行人司司正 李寬으로 황태자를 책봉하는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왔다. 단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鞠躬의 禮로 조서를 맞이한 후 輦을 타고 彸宮하려고 할 때, 진둔 등은 국왕과 그 신하들이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한 후에 궁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의 세종 32년 사례처럼 사신이 예식 거행 전에 미리 의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종료되고 나서 뒤늦게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할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다가 예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채 귀궁이 이루어지려 하자 뒤늦게 오배삼고두 예의 거행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이게 아니면 사전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에 참여하고는 뒤늦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都承旨 姜孟卿과 同知中樞院事 金何 등은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는 국문 밖에서 五拜三叩頭를 행하는 禮가 없다고 하였다. 진둔 등은 현재 중국에서는 迎詔亭에서 五拜三叩頭의 禮를 행한 후에 간다는 사실을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맹경 등은 세종대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번국의주』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명 사신이 『번국의주』대로 거행하는 것이 옳다고 한 전례 및 신하들이 반열에서 벗어나 가려고 하는 마당에 다시금 행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五拜三叩頭의 禮를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명 사신은 이 말을 듣고 말꼬리를 잡듯 국왕만이라도 五拜三叩頭의 禮를 행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강맹경 등은 이것이 대단한 실례라 하여 일축하였다. 결국 진둔 등은 단념하고는 조선의 전례대로 五拜三叩頭 禮의 거행 없이 궁내로 이동하였다. 다만 추후에 『번국의주』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36)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임오.

진둔 등은 『번국의주』를 직접 확인한 후 “이 의주는 홍무 3년에 반포된 것이다. 홍무 14년과 영락 연간에 禮度를 개정하였으니, 마땅히 時制에 따라서 군신이 조서를 館까지 전송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37)</sup> 이미 종료된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아니라 곧 치러질 送詔 예식을 대상으로 해서이긴 하나, 홍무 3년에 반포된 『번국의주』가 아니라 그 이후에 개정된 의주를 준용해야 한다고 한 사실은 꽤나 주목된다.

단종 즉위년의 사례는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려는 조선과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명 사신의 갈등을 노정한다. 그런데 그 근거로 『번국의주』의 준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조선과 달리, 당시 명 사신은 『홍무예제』를 언급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의 실태를 근거 삼아 五拜三叩頭 禮의 거행을 주장하였다. 이때에도 사신은 전거로 삼을 의주를 지니고 오지 않았으며, 세종 32년의 사례와 달리 사전에 의주를 확인하지도 않은 듯하다.

조선은 전례대로 영조예식을 거행하였고, 사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해당 예식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즉흥적인 면모를 노정하였다.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중국 내의 실태를 내세운 것 또한 사전에 준비된 답안이라기보다는 즉흥적, 임기응변적 아이디어에 가까운 듯싶다. 제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와 같은 의주를 언급하였을 것이다. 送詔 예식의 경우 명 사신은 국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조서를 태평관까지 전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번국의주』가 홍무 3년에 반포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해 이후에 개정된 예제를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언급하는 순발력을 발휘하였다. 개정된 의주에는 국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조서를 館까지 전도한다는 구절이 없던 데서,<sup>38)</sup> 명 사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방식의 근거를 즉자적으로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그러하기에 홍무 3년 이후의 新定儀注를 언급하였기는

37)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임오 “此儀 乃洪武三年所頒也 洪武四十年及永樂年間 改定禮度 當依時制 君臣送館”. 홍무 40년은 존재하지 않기에 홍무 14년의 오기일 것이다.

38) ‘蕃國迎接儀’ 및 『大明會典』 권58, 禮部 行人司 儀制清吏司 蕃國禮 어디에서도 국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조서를 館까지 전도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듯하다.<sup>40)</sup>

한편 세종 32년과 단종 즉위년의 사례에서 조선은 한결같이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를 이전부터 준용해 왔기에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고수하였는데, 아래의 기록은 그러한 견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준다. 또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오배삼고두로의 변화도 가능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皇甫仁과 金宗瑞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사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大人의 지시는 이치에 합당하고 我國에서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我國은 太祖高皇帝가 頒降한 儀注에 의거하여 遷命한 것이 오래되었다. 지금 비록 제도를 고쳤다고 하더라도 반사하지 않았는데, 아국이 출지에 대인의 말을 듣고 함부로 의주를 고치는 것은 매우 賽功하다. 청천대 대인은 임시로 전례를 따르고 돌아가 轉達해서 새로 정한 의주를 반강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소서.”<sup>41)</sup>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의견은 사신에게까지 전달된 데서 조선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황보인과 김종서 등은 명 사신의 주장이 이치에 부합하기에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걸림돌은 두 가지로, 하나는 조선의 방식이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오래 전부터 행해 온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개정된 의주가 반사되지 않은 점이었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번에는 전례대로, 즉 조선의 방식대로 하고 新定儀注를 하사받은 이후에는 이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아닌 送詔 예식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하는 와중에 제출된 의견이기는 해도, 이것은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둘러싼 갈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위 기록에서 유추할 수

39) 만약 명 사신이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당시에 『번국의주』가 홍무 3년에 반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국 내에서의 실태를 언급하는 대신에 『번국의주』 이후에 개정된 의주를 준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을 것이다.

40) 홍무 14년과 영락 연간에 禮度를 개정하였다고 한 언설의 실체도 분명치 않다. 홍무 14년과 영락제 재위 기간 동안 번국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 절차가 개정되었음을 확인되지 않는다.

41)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8월 임오.

있듯이, 조선이 국궁의 예를 고수한 것은 오배삼고두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 자체를 부정적 내지 굴욕적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번국의주』를 준용하여 오래 전부터 행해 온 것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어서였을 것이다. 조선은 개정된 의주 내 규정인, 도성문 밖에서는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이치에 부합한다고 보았을 수 있고 또한 명으로부터 이를 하사받게 되면 新定儀注를 준용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예식이 보다 예에 부합한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한편 성종 7년 2월에 또 다시 동일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때 명 사신으로 조선에 온 자들은 戸部郎中 祈順과 行人司左司副 張瑾으로 황태자를 책봉하는 조서를 지니고 왔다. 성종 7년 2월 18일 開城府宣慰使 尹弼商이 復命한 내용에 따르면,<sup>42)</sup> 사신은 한양으로 오는 도중인 개성부에서 間禮官 安處良이 올린 儀註를 검토한 후, 이것이 『대명집례』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道詔 時에는 五拜三叩頭의 예를 행할 것, 西階를 통해서가 아니라 옆 계단(傍階)을 통해서 승강할 것 및 사신이 조칙을 선포한 후 太平館에 나아갈 시 국왕은 의장을 갖추고 선도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옆 계단을 통해서 승강도록 한 것은 이번 사신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이었다.<sup>43)</sup>

영조례 거행에 앞서 조선이 올린 儀註를 확인하고 그 差誤를 헐문하는 명 사신을 상대로, 원접사 서거정은 ‘이 의주는 홍무제가 반사한 것으로 행한 지 오래 되었고 전에 詔使가 왔을 시에도 모두 이 의주를 활용하였다’고 하는, 예전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해명하였다. 사신은 “단지 舊習에 따라 행하고 살피지 못했을 뿐이니, 어찌 마땅히 이를 본받습니까?”라고 하여, 『번국의주』에 의거한 조선의 예식 절차—그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일부 의절—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사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예식들의 거행을 ‘因循’이라고 보았다. 성종은 “작은 절차를 명 사신이 모두 논박하니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倪謙 사례 등의 故事를 근거로 하여 사신을 설득

42)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임진.

43) 특정 예식에 관한 문제제기가 사신의 개인적 역량, 관심 등에 달려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자는 승지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 다음날 問禮官 安處良은 국왕의 의사대로 ‘禮文은 경솔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藩國儀는<sup>44)</sup> 곧 祖宗 아래로 遵守해 온 典禮이므로, 지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다’라고 사신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正使는 ‘몸을 굽혀 조칙을 맞이하는 예절은 藩國儀에는 나타나지 않고 五禮儀註에만 있으니,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sup>45)</sup> 안처량은 ‘詔勅은 황제의 명령이기에 서서 맞이 할 수 없는 까닭에서라고’ 답하였다.<sup>46)</sup> 세종 32년 명 사신 예겸에게 답한 내용과 동일하게 말이다.

명 사신은 국궁이 『번국의주』에 적시되지 않은 사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지만, 『번국의주』가 아닌 『大明集禮』의 儀式대로 邀詔 시에 五拜三叩頭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안처량은 ‘『大明集禮』는 명조의 總集의 예문이고, 藩國儀는 번국이 준수해야 할 바를 취해 參定하여 반행한 것인 까닭에 조선은 대대로 이를 준행하였다’는 논리로 반박하였다. 예조판서마저 안처량과 의견을 같이하자, 명 사신은 한발 물러나 오배삼고두 예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안의 양보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안처량을 상대로 “交趾國, 琉球國 등과 같은 나라도 오배례를 행하는데 禮義之邦인 조선이 어찌 이를 행하지 않는가? 이는 『대명집례』를 보지 않아서다”라고 하여,<sup>47)</sup> 예의지국에 걸맞지 않게 오배례(오배삼고두)를 행하지 않는 조선의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다음날 遠接使 徐居正이 復命한 내용에 따르면,<sup>48)</sup> 명 사신은 『대명집례』를 행하고자 하는 심산에서, 서거정을 상대로 ‘『대명집례』가 천하에 시행된 지 오래되었고 교지국, 유구국과 같은 나라도 이를 행하는데 禮義之邦인 조선이 행하지

44) 안처량이 언급한 번국의가 『번국의주』를 지칭하였을 것임은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281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藩國儀 외에도 蕃國儀註, 蕃國儀注, 藩王儀註 등의 용어가 사용되곤 하였는데, 공식 명칭은 蕃國儀注였다.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275면.

45) 오례의주는 『국조오례의』를 지칭하였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국조오례의』迎詔書儀였을 것이다. 앞서 사신에게 올린 의주란 오례의주였다. 안처량은 오례의주 외에도 번국의(『번국의주』)를 함께 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보여주었기에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것이다.

46)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계사.

47)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계사.

48)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갑오.

않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전날 기사를 감안하면, 이는 영조 시 오배삼고 두 거행에 관한 언급이었다. 서거정은 『대명집례』는 단지 중국에서 행하는 것이지, 무엇을 근거로 조선에서 이를 행하겠는가?’라고 반박하였다.<sup>49)</sup> 『대명집례』에 근거한 오배삼고두 예의 거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 사신은 오배삼고두를 포함하여 그가 제안한 의절들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그 날 안처량이 復命한 내용에 따르면,<sup>50)</sup> 正使는 ‘迎詔 시 國王이 五拜三叩頭를 행하고, 使臣은 中階를 경유하고 國王은 西階를 경유하여 使臣은 남쪽을 향하고 國王은 西壁에 서게 되는 것’이 『대명집례』에 기재된 예라고 하면서도 국왕의 요청에 따라 權禮를 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送詔 시 국왕이 선도하는 것이 예이지만 이 또한 權禮에 따라 백관으로 하여금 선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신의 의사는 모두 좌절된 셈이었다.

성종 7년의 사례 역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려는 조선과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명 사신 간의 갈등이었다. 조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번국의주』를 준용하여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고자 한 것에 비해, 이번의 명 사신은 이전 사신들과 달리 『대명집례』에 의거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명집례』에 근거하여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 관계 면에서 오류라는 점이다. 『대명집례』와 『번국의주』는 사실상 동일하였고,<sup>51)</sup> 실제로 『대명집례』에는 『번국의주』와 마찬가지로 “是日王率國中衆官及耆老僧道 出迎於國門外 接官迎詔書 出館至國門 金鼓在前 次耆老僧道行 次衆官具朝服行 次王具冕服行 次儀仗鼓樂 次詔書龍亭 使者常服行 於龍亭之後”라고 기록되어 있어,<sup>52)</sup>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명 사신이 조선을 상대로 기만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누차 언급하였듯이 명조가 번

49)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갑오.

50)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갑오.

51)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참조.

52) 『大明集禮』 권32, 賓禮3 蕃國接詔儀注.

국내에서 거행되는 영조례 의주를 작성·개정하였어도 사신에게 주지시키지 않는 여건에서, 영조예식에 관한 문제제기 여부 및 어느 예식(들)을 문제 삼을지 하는 것이 명 사신의 개인적 판단·입장에서 비롯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명 사신은 영조례 거행에 앞서 의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오류인 의절들을 잡아내고 이들을 대신하는 바람직한 행위를 제안하면서 그 예적 근거로 『대명집례』를 내세웠을 것이다. 물론 『대명집례』가 근거라는 주장은 착각과 무지의 소산이었다. 사신은 『대명집례』를 지참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이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으로 좁혀 오류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면, 명 사신은 국문 밖에서는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확신하고서는 그 예적 근거로 『대명집례』를 제시하였을 것이다. 사신은 『대명집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함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명 사신) 외국에 조서를 반포한 것이 한 번이 아닌데<sup>53)</sup>’라고 말한 데서 추정할 수 있듯이, 류큐, 베트남 등의 번국에서 조서를 반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를 알았을 것이다. 사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측의 의주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근거가 『대명집례』라고 짐작하였을 것이다. 번국의 국문 밖에서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대명집례』 이후에 작성된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에서 비롯되었지만, 당시 사신은 이 사실을 모르면서도 사행 경험 등을 통해 五拜三叩頭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엉뚱한 것을 예적 근거로 내세웠을 것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다.

명 사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뜻을 모두 접고 조선 측이 주장하는 전례를 따르기는 했어도, 그에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權禮였다. 명 사신은 『번국의 주』에 의거한 조선의 방식을 ‘因循’이라 비판하면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방식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 사신은 조서 반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조선과의 갈등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했을 것이고 국궁으로 조서를

53)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계사.

맞이하는 예절 등이 조선 측의 자의가 아닌 홍무제가 사여한 『번국의주』를 토대로 한 사실을 고려해서인지, 조선의 방식을 권례로 성격 규정하는 대신에 전례대로 영조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번국을 포함한 천하에서 공히 통용되어야 하는 것(一視同仁 구현)인데, 예의지국인 조선이 구습에 매달려 이를 수용하지 않고 비례를 저지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조선 측은 『번국의주』를 준용하는 것인데다가 祖宗 아래로 遵守해 온 典禮이다 보니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논리로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방식 등을 고수하였다. 여기에 더해 『대명집례』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사신의 주장에 대응하여 번국인 조선에서의 영조례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명집례』가 아닌 번국을 대상으로 하는 『번국의주』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4)</sup> 사신은 예의지국이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지 않는 행위를 비례라고 하여 안타까워했지만, 오히려 조선 측은 『번국의주』에 따라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번국의 위상에 걸맞은 예의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조선의 뜻대로 영조례를 전례대로 거행하였기는 해도, 예전과는 달리 조선의 방식이 權禮로 규정된다든지, 예의지국에 걸맞지 않게 천하에 통행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된다든지 하는 현실은 조선 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4. 중종 32년 사례: 갈등의 해소

##### 1) 五拜三叩頭 예 수용의 경위

중종 32년에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우선적으로 그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대명집례』 빙례 ‘蕃國接詔儀注’와 『번국의주』 ‘蕃國接詔儀注’는 사실상 같았지만 『대명집례』를 직접 보지 못한 조선 측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하다보니 이러한 식의 논리로 『대명집례』 수용을 반박하였을 것이다.

이때 명 사신으로 조선에 온 자들은 正使로는 翰林院修撰 巷用卿이었고 副使로는 戸科給事中 吳希孟이었다. 이들은 皇長子의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지니고 왔다.<sup>55)</sup> 正使인 공용경은 의주의 의순관에서 문례관인 예조정랑 임필형이 올린 의주를 확인하고는 국왕이 교외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점 및 생원들이 영조례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그는 조선의 의주 내에 중국과 같지 않은 예식들이 있는 것은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sup>56)</sup> 또한 그는 이번 조서가 통상적인 것과 달리 천자의 특별한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배삼고두를 행하지 않는 것은 不敬과 비례요, 생원이 영조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의지국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예교를 상실한 행위이기에, 이 일이 중국에 전해진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훈계하였다. 명 사신은 ‘비례’를 위주로 조선의 의주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한 셈인데, 이에 대해 임필형은 앞서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논리, 즉 조선의 영조례 예식절차가 오래 전부터 거행되어 왔고 흥무 연간에 반포된 의주를 받들어 지켜 온 것 등으로 대응하였다. 공용경은 임필형의 말을 무시한 채 국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했다. ‘예를 아는’ 국왕은 자신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sup>57)</sup>

그 이후 임필형은 황해도 봉산군 검수참에서 명 사신을 만나, 사신의 말을 수용하여 유생들이 조서를 맞이하는 데 참여토록 하겠다는 대신들의 의논을 전하였다.<sup>58)</sup> 명 사신은 ‘중국과 똑같이 하는 것이니 좋은 일’이라고 반색하였다. 하지만 임필형은 五拜禮 실행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대신들의 의논 및 전교를 전하였다. 국왕과 대신의 논리는 앞서 임필형이 말한 바와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55) 『중종실록』 권83, 중종 31년 12월 임오; 『중종실록』 권83, 중종 32년 3월 기축.

56) 『使朝鮮錄』에 수록된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공용경은 조선의 의주가 개정된 의주가 아니어서 미진하다고 하였다(『使朝鮮錄』「與禮曹正郎 論禮問答之語 謹識之 (后략)」). 따라서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그의 지적은 조선 측의 의주가 개정된 의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의미할 것이다. 본고에서 활용된 『使朝鮮錄』은 殷夢霞·于浩 選編, 2003 『使朝鮮錄』, 北京圖書出版社에 수록된 것이다.

57) 『使朝鮮錄』「予初至義順館 禮曹正郎任弼亨來呈儀注 (后략)」

58)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달리, 『使朝鮮錄』에 따르면 공용경은 평양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사신은 재차 오배삼고두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이 천하에서 통용되는 예(일시동인)이요,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비례·불경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여기에 더해 명 사신은 국궁의 예가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오래 전부터 거행되어 왔다고 하는 조선 측의 논리에 대응하여, 태자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는 것이 別禮이기에 전례를 고집해서는 안 되며 홍무, 영락, 景泰 시대의 禮가 각각 다르고 그것은 모두 『大明會典』에 실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천하에서 通行하는 의례이기에 거행되어야만 한다고 재차 소리 높였다. 이에 대한 임필형의 즉자적 해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국왕이 지성으로 사대를 행하기에 詔使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를 받아들여 오래 전부터 준행해 왔는데 함부로 고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까닭에 오배삼고두 예의 거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그러자 명 사신은 조선을 특별히 애호하여 보낸 조서를 오배삼고두의 예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존대하지 않는 것이요,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고는, “迎詔는 天下의 大事이니 國王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인데, 우리들이 힘써 말한 다음에야 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 나라에서 임의대로 하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임의대로 하라고는 했지만 본심이 아닌 게, 임필형이 ‘의주를 고쳐서 써와야 하느냐’고 묻자, 명 사신은 다른 사항은 다 옳지만 五拜三叩頭의 예는 고쳐 써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채 五拜三叩頭 예의 거행을 고수하였다.<sup>59)</sup>

임필형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국왕은 사신의 말만으로 五拜三叩頭의 예를 행하는 것은 흡사 古禮를 개정하는 것과 같아 곤란하다는 대신들의 의논을 뒤로 한 채, ‘이것은 천하에서 通行하는 의례이기에 거행해야만 한다’는 사신의 말이 있으니 다시 논란하지 말고 따르는 것이 옳겠다고 결정했다.<sup>60)</sup> 결국 명 사신의 논리 및 비타협적 태도로 말미암아 국왕은 최종 정책 결정자로서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을 결단한 것이다.

이후 임필형은 평산부의 寶山(館)에서 명 사신을 만나 ‘국왕이 명 조정을 지

59)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갑신.

60)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갑신.

극히 공경하고, 조선의 의주는 홍무제가 반사한 이래 예전부터 행해 온 것으로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왕의 해명을 전하였다. 오배삼고두의 예를  
수용한다는 카드를 먼저 꺼내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신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었다.<sup>61)</sup> 하지만 명 사신이 예전부터 행해 온 것이라 쉽사리 바꿀 수 없  
다는 조선 측의 논리에 이번 조서의 전례 없음, 달리 말해 別禮를 이유로 여전  
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임필형은 결국 오배삼고두 예를 수용한다는 국왕의 뜻  
을 전하였다. 이에 공용경은 '이것은 예를 이루는 순수한 정성이요 예의를 지키  
는 나라라고 하겠다'라고 하여 조선 측의 양보를 환영하였다.<sup>62)</sup>

중종 32년 3월 10일에 영조례가 거행되었고,<sup>63)</sup> 이때 도성문 밖에서 국왕은 처  
음으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였다.<sup>64)</sup>

## 2) 五拜三叩頭 예 수용의 원인

중종 32년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발생한 갈등은 이전  
사례들과 달리 조선 측이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명 사신, 구체적으로는 정사인 공용경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누차 언급하였듯이,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두고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하는 현상에서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갈등  
발생의 구조적 조건이—조선은 홍무제가 하사한 『번국의주』·蕃國接詔儀注에 의  
거하여 국궁을 행하려는 반면에 명은 그 개정 버전이라 할 수 있는 '蕃國迎接  
儀'('蕃國迎詔儀')에 의거하여 오배삼고두를 거행해야 한다고 봄— 갖추어진 동  
시에 의주의 작성·개정 자체에 자족하다시피 하는 명조의 태도와 맞물려 사신  
으로 온 인물에 따라 갈등의 유무와 정도가 결정된 점이었다. 이러하다보니 조  
선이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상수라고 한다면, 명 사신이 이를 문제 삼  
으면서 오배삼고두의 거행을 주장하는 것은 변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공용경

61) 이는 임필형의 자의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국왕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62) 『使朝鮮錄』「越四日 予至寶山 (후략)」

63)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기축.

64) 『使朝鮮錄』, 一曰出使之禮 一迎詔儀.

이라는 변수는 조선의 국궁 의례를 문제 삼은 여타 사신들과도 달리 『번국의주』에 의거한 국궁 실행을 중국에는 인정한 것도 아니요, 도성문 밖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고 나서 뒤늦게 이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요, 『번국의주』에 의거한 국궁 실행을 부정하였음에도 결국에는 ‘權禮’를 명분 삼아 양보한 것도 아니었다. 명 사신 공용경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채 비타협적으로 오배삼고두 거행을 고집하였고 종국에는 조선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이하에서는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문제 삼은 여타 사신들과도 구별되는 공용경의 (개성적) 면모를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중종 32년에 이르러서 이전과 달리 오배삼고두의 예가 수용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용경은 사신의 임무를 명받았을 때 명의 조정 신하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의 故事를 물어보았으며 요양(요동도사)의 담당 관리를 상대로 해서는 지난날의 典故를 알아보았다. 그가 실망스럽게도 조선의 고사를 아는 이는 없었고 요양의 관원 역시 지난날의 전고를 알지 못하였다.<sup>65)</sup>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공용경과 오희맹은 1521년(중종 16)에 副使로 조선으로의 사행 임무를 수행한 바 있는 史道로부터 의주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취득하였다.<sup>66)</sup> 이처럼 사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공용경(오희맹)의 준비 과정 및 자세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遼東都指揮使司를 발신자로 하는 奏文을 받고 난 후 중종이 전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인 다음 기록은, 당시 명 사신의 제대로 된 예의 구현을 위한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65) 『使朝鮮錄』 「使朝鮮錄序」, 일정 정도 과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은 명의 신료들 가운데 조선에서 거행되어 온 영조례에 관한 정보를 아는 이가 별달리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번국에서의 영조례 거행에 관한 명조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이는 놀랍다고 할 수 없다.

66) 부사 오희맹의 「使朝鮮錄後語」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 조정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았지만 별로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앞서의 사행에 대해 나의 스승이신 史鹿野(史道를 지칭: 필자) 선생께 물어보고서 간신히 의주에 대해 조금 들은 바 있었다”고 한다.

天使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동도사 大人으로 하여금 我國에게 자문을 보내도록 한 것은 아국에게 기강을 보이고자 해서인데, 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또한 ‘연로의 역관에서 여인이 시중드는 것을 금지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女樂을 가리킨 것이다. (중략) 이번 천사는 자신이 먼저 금지하니, 예전에 없던 일이다.<sup>67)</sup>

이처럼 명 사신은 예전에 없던 행보를 선보였다. 조선 영내에 들어서기 전에 자문을 보내 여인이 시중드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일은 풍속을 교정하고 예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자문에 수록된 사신들의 案驗에 따르면, “도로의驛館은 옛 풍속에 젖어 흔히 여인이 答應한다고 한다. 그 나라가 본디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일은 혐의스러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전에 사신이 금지한 일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沿路의 풍속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참으로 나라의 체모가 관계되고 여러 가지 거동에 관계되는데, 이미 전하여 듣고서 알았으니, 감히 일찍이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sup>68)</sup> 명 사신은 예의지국에 걸맞지 않은 풍속이 근래 들어 바뀌기는 했어도 그러한 풍속이 실행되었던 사실을 안 이상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자문을 조선에 보낸 것이다. 연로의 역관에서 의 사신 접대 방식에 대한 파악은 조선의 고사와 지난날의 전고를 알아내고자 한 공용경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sup>69)</sup>

이들 사례가 조선 영내로 진입 이전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명 사신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또 다시 이전 사신들과 구분되는 남다른 면모를 노정하였다. 공용경이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영내에 진입한 이후 첫 번째 客館인 의주의 의순관에서 의주를 확인한 사실은 그러한 면모에 해당한다. 이전에도 사신들은 드물게나마 사전에 의주를 확인하기는 했어도, 공용경처럼 조선 영내로 진입하자마자 의주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 빨라야 황주에 이르러서였다. 이러한 공용경의 행보는 史道로부터 얻은 의주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1521년에 명 사신 唐寧와 史道는 결실을 보진 못했어도 오배삼고두 예의 실행 및 유생

67) 『중종실록』 권83, 중종 32년 2월 정사.

68) 『중종실록』 권83, 중종 32년 2월 정사.

69) 이것은 사도로부터 얻은 의주에 관한 약간의 정보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공용경이 의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 노력은 영조의례를 ‘제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에서였을 것이다.

의 영조례 참여를 제안한 데서,<sup>70)</sup> 공용경은 조선 국왕이 교외에서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고 생원이 영조례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사도로부터 미리 전해 듣고는 조선 영내에 진입하자마자 의주를 통해 직접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예상대로 문제를 발견하자, 공용경은 앞서 唐皇와 史道가 제기한 것과 동일한 제안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공용경이 국궁을 문제 삼으면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전 사신들과 다른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영조례를 예의에 맞게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남다른 집념에서인지 해당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몇 가지 면모가 확인된다.

첫째, ‘사신은 예제를 통달해야 한다’라는 그의 언급에<sup>71)</sup> 부합하듯, 공용경은 이전 사신들과 달리 번국 내 영조례의 의식절차를 비교적 정확히 꿰고 있었다.<sup>72)</sup> 그는 국궁의 禮가 紹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 의거하여 오래 전부터 거행되어 왔다는 조선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紹무 시대의 禮는 이후 개정되었고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은 현재 통용되는 禮로 그 전 거가 『대명회전』이라고 하였다. 紹무 시대의 禮인 『번국의주』를 묵수하지 말고 時禮인 『대명회전』을 준용해서 오배삼고두의 예를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명회전』에는 『대명집례』(『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의 개정판으로 오배례(오배삼고두)가 적시된 ‘蕃國迎詔儀’가 수록되어 있었다.<sup>73)</sup> 공용경의 이러한 면모는 사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예제를 통달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조선의 故事와 지난날의 典故를 파악하고자 한 행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74)</sup> 이는 그전에 국궁의 예를 문제 삼은 사신들이 번국인 조선에서도 오

70) 『중종실록』 권85, 중종 32년 9월 경진 “政院以禮曹意啓曰 五拜三叩頭之禮及儒生祗迎之事  
辛巳年天使唐皇史道等 越江初 先言之 今天使龔用卿吳希孟等 見問禮官 先問此禮 兩度天  
使 皆行此禮 請定爲一定之式”

71) 『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 10월 기미.

72) 공용경이 의례에 밝은 면모에 관해서는 김문식, 2015 「明使 龔用卿이 경험한 외교의례」  
『조선시대사학보』 73, 224-225면 참조.

73) 앞서 소개한 『大明會典』은 공용경 사후에 편찬된(1587년) 속칭 『萬曆會典』이라 하는 것  
인데, 공용경이 보았을 1509년에 편찬된 『大明會典』(『正德會典』)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 『大明會典』(正德本) 卷55, 禮部14 蕃國禮 蕃國迎詔儀 참조.

배삼고두의 예가 거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면서도 그 예적 근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엉뚱한 예서를 동원하곤 한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둘째, 그는 번국인 조선에서도 오배삼고두가 거행되어야 함을 뚜렷이 알고 있었고 그 예적 근거도 인지하고 있는 데다가 예외에 걸맞은 영조례 구현에 집착 하다시피해서인지,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 온 조선의 방식을 權禮로 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전 사신들은 국궁의 예 따위의 일부 의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예식절차는 예(의)에 부합하였고 그들이 보더라도 조선은 예의지국에 걸맞은 면모를 보이고 있었고 더욱이 영조례의주는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에 의거한 것이다 보니, 중국에는 자신들의 의사를 접고 조선의 방식을 수용하였다. 이와 달리 공용경은 조선이 올린 의주에서 잘못되었다고 본 예식 두 가지를 지적하며 각각의 정답을 제시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조선 측이 생원의 영조례 참여를 수용하였을 때 권례로라도 국궁의 예를 용인할 법도 했지만, 그는 일체의 타협 없이 오배삼고두 예의 실행을 요구하였다. 그는 국궁의 예가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를 토대로 하여 오래 전부터 행해 온 것이라는 조선의 논리를 세세히 공박하면서 전면 부정하였다. 그는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비례, 불경이라고 못 박았기에, 제대로 의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에서 오배삼고두 예를 고수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皇長子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조선에까지 반포하는 행위는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sup>75)</sup> 이 임무를 맡은 공용경은 이 일이 ‘一統之禮’로써 조선 국왕

74) 그가 『대명회전』 수찬에 참여한 사실도(『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계사) 간과해서는 안 된다. 正德帝 시기에 간행된 『대명회전』은 이후 가정제와 만력제 시기에 重修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한규, 2011 『사조선록使朝鮮錄 研究: 송(宋), 명(明), 청(清) 시대 조선 사행록(使行錄)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80면 참조.

75) 가정제 시기 명 측은 조선을 내복과도 같이 간주하여('視同內服') 전례 없는 제도들, 가령 謄黃制度 등을 행하고 특별 예우를 베풀었다. 황장자 탄생을 알리는 조서의 조선에의 반포는 이러한 특별 예우의 일환에서였다. 가정제 시기 명 측의 이러한 행보는 국초 이래로 조선의 예의지국과 이와 맞물린 지성사대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 결과이도 했지만, 大禮議 국면에서 황제 측의 大禮의 개정 조치들이 조정 안팎에서 반대에 직면한 데 비해 조선은 사신을 보내 이를 恭賀해서 황제 측이 조선의 행보에 호의를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한 테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高艷林, 2008 「嘉靖時期中朝關係的新階

을 특별히 대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부사인 吳希孟의 입을 빌자면, “**同仁**을 크게 펴서 내외를 구별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華夷가 일체되게 하였다. 조선은 비록 황복이지만 평소에 예의를 지켜 상국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이적시하지 않고 중국처럼 간주했다. 황태자께서 탄생하셨으니,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바가 있게 되었다”고<sup>76)</sup> 하여, 해당 조서의 반포를 예의지국이며 중국과도 같은 조선을 대상으로 일시동인의 차원에서 천자의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본 것이다.<sup>77)</sup> 그러하였기에 공용경은 조선이 이 특별하고도 유례없는 조서(別禮)를 ‘비례’로 맞이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을 예의지국이며 중국과도 같은 곳으로 간주한(視同內服) 만큼, 그리고 이를 우대하여 유례없는 조서를 반포하였다고 생각한 만큼,<sup>78)</sup> 그는 舊禮에 구속되어 천하에서 통행하는 예를 외면하는 조선의 비례·불경을 수용하기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의 사신들과 달리 말이다.

이처럼 중종 32년에 도성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 이전 사례들과 달리 조선 측이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 데에는 영조례를 예의에 맞게 구현하고자 하는 공용경의 남다른 집념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9)</sup> 명 사신의 역할에는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국왕의 결단도 한몫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신들의 반대 의견도 있은 테다가 그 전에 몇 차례 논란이 있었어도 결국은 조선의 뜻대로 국궁의 禮가 관

段』『西北師大學報：社科版』참조. 그리고 대례의 국면에서 조선 측의 동향에 관해서는 구도영, 2006 「중종대(中宗代) 사대인식(事大認識)의 변화: 대례의(大禮議)에 대한 별행(別行)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62 참고.

76) 『使朝鮮錄』「使朝鮮錄後語」.

77) 『使朝鮮錄』「予初至義順館 禮曹正郎任弼亨來呈儀注 (후략)」“初差官往汝國來 皆出朝廷聖意 此原無舊例 前所謂以一統之禮 待汝國王 正謂此也”

78) 공용경이 조선을 예의지국으로 인식하는 면모는 『使朝鮮錄』곳곳에서 확인된다. 한편 가정제 시기 조선을 대상으로 한 명 측의 전례 없는 행보로 보아, 공용경이 조선은 예의지국이며 내복과도 같은 곳이어서 명이 특별하고 유례없는 조서를 보냈다고 한 생각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79) 부사인 오희맹도 그와 보조를 같이 하였을 것이다. 가정제 시기 명 측이 조선을 내복과도 같이 간주하여 전례 없는 제도들을 행하고 특별 예우를 베푼 행보는,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된 변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철된 경험에 축적되어 있었음에도, 중종은 최종결정권자로서 결단을 내려 명 사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그 결단은 능동적이었다기보다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편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중종은 1521년(중종 16)에는 명 사신 唐臯와 史道의 동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용경이 이전의 사신들과 달리 뜻을 전혀 굽히지 않은 채 오배삼고두의 거행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최종결정권자로서 결단을 내려 명 사신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것이다.<sup>80)</sup>

## 5. 맷음말을 대신하여: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기왕의 연구에서는 명 사신의 五拜三叩頭 禮 요구를 부당하고 강압적 성격의 것이거나 보다 저자세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중종대 五拜三叩頭 禮의 수용을 부당한 외압에의 굴복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중종대에 조선의 대명 태도가 저자세로 바뀐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sup>81)</sup> 그런데 본고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종래의 이해 방식은 당대의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명집례』(『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의 작성 이후에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라는 의주가 작성되었고, 이 의주는 번국의 왕이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제는 ‘一視同仁’의 차원에서 번국도 지방 아문과 마찬가지로 五拜三叩頭의 禮를 행하도록 한 것이

80) 이전의 사신들과 달리 공용경의 오배삼고두 구현을 향한 의지가 확고부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와 근거가 명확하고 풍부한 점, 오배삼고두를 거행하지 않는 국왕의 행위가 불경·비례로 간주된 점, 그리고 예의지국이며 중국과도 같아 해당 조서를 특별히 보낸 것인데 실망스럽게도 천하에서 통행하는 예로 맞이하지 않는 비례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권자로서 중종은 국궁이 아닌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81) 계승범, 앞의 논문; 유바다, 앞의 논문.

라고 할 수 있다. 명이 번국에서도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한 것은 번국(조선)을 대상으로 보다 저자세를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한 것이 강압적 성격의 것 이거나 보다 저자세를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면, 명은 개정된 의주를 ‘지면’ 상에 남기는 것으로 자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에 이를 반포하거나 사신을 통해 이를 강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신이 의주의 개정 사실 자체를 몰랐을 정도였다.

명조는 보다 온전한 ‘一視同仁’의 구현 차원에서 『대명집례』(『蕃國儀注』) ‘蕃國接詔儀注’의 작성 이후 ‘蕃國迎接儀’(‘蕃國迎詔儀’)를 작성하였을 것이면서도 정작 번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식적, 제도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러한 탓에 조선을 상대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개별 사신의 역량, 관심, 성향 등에 달려 있었고 이와 맞물려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오배삼고두 예의 구현에 무심한 거의 대부분의 명 사신들과 달리, 공용경을 포함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발심은 조선을 상대로 한 길들이기, 모욕주기에서가 아니라, 중국 내 지방에서 구현되는 방식과의 同調, 천하에서 통행하는 예의 구현 등의, 그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예를 실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오배삼고두의 예를 관철한 공용경이 조선 관원을 상대로 한 다음과 같은 언설은 어떠한 심산에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요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왕의)前導를 사용하고 세 번의 舞蹈가 있으며 열두 번의 절이 있는데, 왜 오직 이 교외의 예만 아껴서 행하지 않는가. 다른 예는 행하고 오직 이 예만 행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그 큰 것은 버리고 그 자잘한 것만 세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천자께서는 그대들 국왕을 대우하기를 천하와 더불어 일체로 여겨서 그대들 나라에서 예를 행하였는데, 천하와 다름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천하)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분수 밖의 다툼도 아니고 이치 밖의 요구도 아니다. 단지 그대들이 예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sup>82)</sup>

82) 『使朝鮮錄』「與禮曹正郎 論禮問答之語 謹識之 (후략)」. 공용경의 이러한 식의 언설은 텁 서비스가 아닌 게, 공용경은 조선 사행 이후 ‘達禮制 懷遠人 以昭盛治事’를 제목으로 하

공용경과 함께 온 사신인 오희맹 또한 오배삼고두 예의 실현을 포함한, 처음으로 구현된 네 가지 일을 “우리 황상의 성스러운 교화가 멀리 미치고 인문이 널리 펼쳐졌음을 입증하였다”고 자평하였다.

명 측의 본의와 별개로 조선은 명 사신의 五拜三叩頭 禮 요구를 모욕주기, 길들이기로 오인하였고 그리하여 부당하고 강압적이라고 인식된 명 사신의 요구에 반발해서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에 국왕이 오배삼고두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을 굴욕적인 類의 일로 보는 인식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상과 달리 말이다.

도성문 밖에서 五拜三叩頭의 禮로 조서를 맞이해야 하는 지 여부와 별개로, 영조례 예식절차 가운데 국왕이 조서를 상대로 拜禮 내지 叩頭禮를 행하는 예식은 여럿 있었고,<sup>83)</sup> 여타 對明의례에서도 국왕의 황제(상징물)를 대상으로 한 拜禮와 叩頭禮는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sup>84)</sup> 그런데 이 현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拜禮와 叩頭禮는 상하 차등적 君臣 의례였고 국초 이래로 조선(왕)은 자기 신념적 차원에서 제후의 분의를 견지하고 있었기에,<sup>85)</sup> 조선(왕)이 황제(상징물)를 상대로 拜禮와 叩頭禮를 행하는 것은 전혀 꺼릴 일이 못 되었다. 조선의 신하가 자신의 위상을 받아들여 국왕에게 拜禮와 叩頭禮를 행하

---

는 글을 상주하여 조선을 대상으로 해서는 內服의例에 따라 천하에 詔誥하는 일이 있으면 다 通諭하기를 청하였다. 즉 謄黃制度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조선이 洪武帝 시기 이래로 중화를 사모하고 향화하는 마음이 두터워 신하의 절의를 지키고 조공을 끊지 않아 왔다는 것 등을 이유로 조선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타 번국과 달리 중국 내에 반포하는 詔誥를 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는 황제에 의해 수용되었다(『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 10월 기미). 이와 관련해서는 高艷林, 2008 「嘉靖時期中朝關係的新階段」『西北師大學報: 社科版』 참조.

83) 『세종실록』 권132, 오례 영조서의.

84) 가령 『세종실록』 오례의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와 迎勅書儀 등에서 확인된다.

85)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2016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 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최종석, 2017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민족문화연구』 74; 최종석, 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역사비평』 121 참조.

는 것이<sup>86)</sup> 굴욕적이지 않듯이, 자기 신념적으로 제후(신하)의 위상을 수용하고 있는 조선 국왕이 황제(조서)에게 이러한 의례를 거행하는 것도 전혀 굴욕적이지 않았다.<sup>87)</sup> 실제로 명 사신을 상대로 한 반론에서는 물론이요, 조선 내의 논의에서조차 명 사신이 요구하는 오배삼고두 예를 굴욕적으로 보는 인식 내지 언설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이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을 수용하려 들지 않은 것은 그 예식이 굴욕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서가 아니라, 『번국의주』를 준용하면서도 의리에 맞게 변개하여 국궁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행해 온 것인데다가 예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사신들은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사신이 문제 삼았다고 해서 이 말만 믿고 홍무제가 반사한 『번국의주』의 준용이면서 조종예제이기도 한 기왕의 방식을 함부로 개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적시된 개정된 의주를 하사받게 되면 이를 준용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식의 언설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번국의주』에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조선은 오배삼고두의 예를 거행하였을 것이고 이 문제로 조선과 명 사신이 갈등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종대에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굴욕적인 일도 아니요, 저자세를 노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재차 언급하듯이, 요구하는 명(사신)도, 반박하는 조선도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한 것을 굴욕주기, 길들이기 식의 행위와 연관 짓지 않았다. “五拜三叩頭의 예는 大人(명 사신: 필자)이 말한 바에 따라 부득이 洪武聖制(『번국의주』: 필자)를 고쳐야 하므로 지극히 미안하다”<sup>88)</sup> 내지 “聖旨를 받들어 반포한 의주(『번국의주』: 필자)를 예로 부터 준행하고 있는데, 우리 소국에서 함부로 고치기가 매우 미안하기 때문에

86) 조선 국왕이 신하들로부터 배례와 고두례를 받았음은 가령 『세종실록』 오례의 正至百官 朝賀儀, 正至誕日使臣及外官遙賀儀 등에서 확인된다.

87) 현대 한국인의 눈에 拜禮와 叩頭禮 못지않게 굴욕적으로 보이는 舞蹈禮, 山呼萬歲 또한 영조례 거행 시에 수차례 등장한다.

88) 『중종실록』 권83, 중종 32년 2월 기묘.

이와 같이 말했을 뿐이다”라는<sup>89)</sup> 조선 측의 언설을 감안하면,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이 조선에게 의미한 바는 오배삼고두 예라는 새로운 것의 수용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것의 폐기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에게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은 흥무제가 사여하여 예로부터 준행하여 온 의주를 개정한 데 따른 미안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굳이 새로이 들어온 것에서 의미를 찾자면, 오배삼고두를 수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설인, “이제 들은 詔使의 말은 올바른 예에 맞으니 준수해야 한다”,<sup>90)</sup> “이것은 천하에서 통행하는 예이므로 시행해야만 한다는 사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sup>91)</sup>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보다 올바르고 타당한 예의 준수, 천하통례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이 조선에게 의미한 바가 이러하였기에, 일단 수용되고 나서는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거부감 없이 실행되었고 例式으로까지 자리 잡았다.<sup>92)</sup>

주제어 : 영조례, 명 사신, 번국의주, 오배삼고두, 국궁

투고일(2018. 7. 31), 심사시작일(2018. 8. 16), 심사완료일(2018. 8. 31)

89)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갑신.

90) 『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 10월 기미.

91)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3월 갑신.

92) 오배삼고두를 수용하여 의주를 고쳤다고 했지만(『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 10월 기미), 이는 『국조오례의』 ‘迎詔書儀’의 개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 이후로도 『국조오례의』 ‘迎詔書儀’는 국궁으로 조서를 맞이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이 고친 의주란 명 사신에게 올리는 의주였을 것이다. 물론 이 의주에 따라 영조례가 거행되었다. 그로 인해 오배삼고두 예의 수용 이후로는 오배삼고두의 예가 기본적으로 구현되면서도 간혹 조선 조정 내에서 『국조오례의』 ‘迎詔書儀’와 상이하게 오배삼고두의 예로 조서를 맞이하는 이유와 내력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을유: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4, 광해군 1년 3월 무신: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2월 정사 참조.

### 〈Abstract〉

## Research on Conflict between Joseon Court and Ming envoy Surrounding YeongJo(迎詔) ritual

Choi Jongsuk \*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conflicts between the *Joseon* court and *Ming* envoy occasionally happened. Among these conflicts, the main and continuing problem was the ceremony procedure of accepting *Joseo*(詔書) outside the capital city gate. The *Joseon* side tried to receive *Joseo*(詔書) in *Kuk-kung*(鞠躬) manner. On the contrary, *Ming* envoy said that it should be received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There were several times confrontations over this issue. In 1537, when the *Joseon* embraced the demand of *Ming* envoy, finally the confrontation came to an end with reception of *Joseo*(詔書)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The Joseon* was trying to practice *Kuk-kung*(鞠躬) manner, based on *Bunkukuiju*(蕃國儀注) given by *Ming* emperor *Taejo*(太祖). However, the protocol for *YeongJo*(迎詔) ritual, which was written after *Bunkukuiju*(蕃國儀注), was prescribed that the king of *Bunkuk*(蕃國) would receive *Joseo*(詔書)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Such a modification was made, in dimension of *Ilsidongin*(一視同仁), for *Bunkuk*(蕃國) to receive *Joseo*(詔書)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as in the case of the provinces of the *Ming* Dynasty. Although the *Ming* Dynasty, in order to implement the more complete *Ilsidongin*(一視同仁), wrote the revised protocol for *YeongJo*(迎詔) ritual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unkukuiju*(蕃國儀注), it did not take any official or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lement it. Because of this, the act of asking the *Joseon* to receive *Joseo*(詔書)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depended on the individual ability, interest, and inclination of the individual envoy, and occurred in an irregular and intermittent manner.

It was not because the ceremony had a humiliating meaning for the ceremony that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Joseon* dynasty strove not to receive *Joseo*(詔書) in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The *Joseon* court thought that the reception of *Joseo*(詔書) in *Kuk-kung*(鞠躬) manner had been done a long time before and it was reasonable in terms of courtesy. In addition, the *Joseon* court could not have revised the way of the original by believing only these words because some *Ming* envoys made objection.

Therefore, for the *Joseon* dynasty the acceptance of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was meaningful to discard the existing one rather than to accept the new one. In other words, for the *Joseon* dynasty the acceptance of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would have come as a result of the amity of *Ming* emperor *Taejo*(太祖) and the amendment of the ritual which has been followed since. In other words, it would be regrettable for the *Joseon* that they changed the ritual which had been done since *Ming* emperor *Taejo*(太祖) gave the protocol. In addition, for the *Joseon* dynasty the acceptance of *Opasankodu*(五拜三叩頭) manner implied the observance of more appropriate and proper ritual, and the acceptance of World courtesy(天下通禮).

**Key Words :** *YeongJo*(迎詔) ritual, *Ming* envoy, *Bunkukuiju*(蕃國儀注), *Opasankodu*(五拜三叩頭), *Kuk-kung*(鞠躬)